

국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제20416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미성년자”로, “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한다.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를 ‘연 나이’ 기준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